

대법원 2002. 9. 24 선고 2002다12062 판결 [보증채무금]

참 조 조 문

[1]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(1998. 9. 14.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,
민법 제428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2. 9. 24 선고 2002다1206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02. 1. 18 선고 2000나20073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B은행

【피고,피상고인】 신BA기금 (소송대리인 변호사 곽CA)

【원심판결】 부산지법 2002. 1. 18. 선고 2000나2007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원심의 인정 및 기록에 의하면, 주식회사 AA은행(2001. 11. 1. 주식회사 AB은행으로 신설합병됨. 이하 'AA은행'이라고 한다)은 1998. 6. 29.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(1998. 9. 14.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DA은행(이하 'DA은행'이라고 한다)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는데,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DA은행으로부터 AA은행에게 이전되는 계약이전의 범위는 계약이전기준일(1998. 6. 29. 08:00) 현재 그 결정에서 정하는 DA은행의 자산·부채(DA은행의 경영업무와 관련된 자산·부채 등을 포함함)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, 부수업무와 관련된 계약상의 지위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, DA은행이 피고와 맺은 신BA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AA은행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, 한편, 기록에 의하면, 피고는 DA은행과 맺은 신BA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수탁기관인 DA은행의 신용보증서 발급상의 잘못을 이유로 채권자(대출금융기관)로서의 DA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, 그 면책사유의 발생이 위 계약이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대출기관으로서의 DA은행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AA은행에 대하여도 그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, 그 면책사유가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고 AA은행이 위 업무위탁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.

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내지 신BA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서성(재판장) 이용우 배기원(주심) 박재윤